

경상남도 함양군·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서

경상남도 함양군과 동남지방통계청(이하 '양 기관'이라 함)은 지역통계 개발 및 지역통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교류 협력을 통하여 지역통계를 개발함으로써 함양군 발전 전략 마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본운영 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.

제3조 (협약내용) 양 기관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.

1.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함양군 특화 승인통계 등 개발
2. 학술 및 연구 성과의 활용
3. 지역사회에 특화된 통계 인프라 조성
4. 지역 내 통계 관련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성
5. 상호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 및 자료 등의 공동 활용
6.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

제4조 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하며,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.

③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3년 단위로 협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,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.

제5조 (비밀유지 의무)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상호 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.

제6조 (신의성실 의무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, 관련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7조 (기타) 이 협약서의 해석 또는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제8조 (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)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가 공동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4월 1일



경상남도 함양군수
서 춘수

서 춘수



동남지방통계청장
민 경 삼

민 경 삼